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8.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고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분야의 효율적인 인력 충원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6.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6항 중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로 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술서기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관으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6호 중 “14명”을 “17명”으로, “6명”을 “8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한다.

제33조제9항제2호 중 “64명(4급 20명)”을 “1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 9명)”으로, “26명, 5급 18명”을 “30명, 5급 2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4명”을 “16명”으로, “8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4명(4급)”을 “23명(4급 9명, 4급)”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12,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략)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 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 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 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u>부이사 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 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u> <u>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u>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 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 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총 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⑦ ~ ⑫ (생 략)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부이사</u> <u>관·검찰부이사관·과학기술서</u> <u>기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u> <u>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u> <u>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u> ----- ----- ----- -----.
제8조(교정본부) ① ~ ④ (생 략)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직 업훈련과·사회복지과·복지과 ·보안과·분류심사과·의료과 ·심리치료과·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 획과장·직업훈련과장·사회복 귀과장·복지과장·보안과장·	제8조(교정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마약사범 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⑥ ~ ⑮ (생략)

제15조(지방교정청) ①·② (생략)

③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사회복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④ ~ ⑫ (생략)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⑤ (생략)

⑥의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⑥ ~ ⑮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교정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서기관 -

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㉑ (생략)

제19조(의료부) ①·② (생략)

③각 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⑪ (생략)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⑤ (생략)

제20조(소년원) ①·② (생략)

-----.

----- 과학기술서기관
로-----

----- 과학기술서
기관·공업사무관 -----
-----.

⑦ ~ ㉑ (현행과 같음)

제19조(의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서기관---
---.
----- 과학기술서기관
로-----
---.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 과학기술
서기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지원과장·교무과장·의료재활과장·분류보호과장·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⑩ (생략)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② (생략)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교무과장·분류심사과장·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⑨ (생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③ (생략)

④ 각 과장, 전자비자센터장 및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및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과장 및 이민특수조사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

③ -----

----- 과학기술서기관 -----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학기술서기관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보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
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㉔ (생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1. ~ 14. (생략)

15. 삭제

16.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6명, 5급 2
명 및 6급 2명)

③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출입
국관리사무관으로-----

⑤ ~ ㉔ (현행과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4. (현행과 같음)

16. ----- 17명-----
----- 8명, 4급 또
는 5급 1명--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현행과 같음)

2.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삭 제>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 및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산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전주교도소·의정부교도소·군산교도소 의료과장,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신경과장 및 대구소년원·광주소년원·대전소년원·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8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748
고위공무원단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1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5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
서기관	17
서기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9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3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8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25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 호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교정관	21
보호사무관	11
검찰사무관	20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8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9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교감	32
보호주사	11
검찰주사	35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	37
행정주사	3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6
행정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교감	3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3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	4
교감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검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9
보호주사보	11
검찰주사보	10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8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2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3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보호서기	1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6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0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운전서기보	9
방호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6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2
검사 계	30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0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2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8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748
고위공무원단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5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
서기관	17
서기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9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 · 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3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8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25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교정관	25
보호사무관	15
검찰사무관	20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3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8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10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교감	32
보호주사	11
검찰주사	35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	35
행정주사	3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6
행정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교감	3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3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	4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검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5
보호주사보	8
검찰주사보	10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8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1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3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6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0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운전서기보	9
방호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6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2
검사 계	30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0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2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총계	138
일반직 계	1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5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1
검찰사무관	1
검찰사무관(교수)	7
교정관	1
교정관(교수)	5
보호사무관(교수)	2
출입국관리사무관(교수)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5
검찰주사	5
교감	10
공업주사	1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2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교위	1
검찰주사보	4
교위	1
보호주사보	2
전산주사보	3
출입국관리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공업주사보	2
식품위생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방호주사보	1
검찰서기	8
교사	10
간호서기	1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3
보호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3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검사 계	19
검사	8
검사(교수)	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16,672
일반직 계	16,672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서기관	58
과학기술서기관	59
서기관 또는 교정관	3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0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교정관	331
의무사무관	24
약무사무관	13
간호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교감	1,443
공업주사	1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식품위생주사	13
의료기술주사	15

약무주사	3
간호주사	38
시설주사	27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2
교위	1,820
공업주사보	58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35
의료기술주사보	14
간호주사보	62
시설주사보	23
교위 또는 전산주사보	4
전산주사보	1
운전주사보	5
교사	5,636
공업서기	68
방송통신서기	1
식품위생서기	24
의료기술서기	7
간호서기	85
보건서기	1
시설서기	11
교사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1
운전서기	5

교도	6,121
공업서기보	89
식품위생서기보	17
시설서기보	5
운전서기보	261
기록연구사	4
전기운영주사보	2
기계운영주사보	2
통신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5
기계운영서기	6
전기운영서기보	7
기계운영서기보	14
열관리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7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	10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16,672
일반직 계	16,672
고위공무원단	1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서기관	58
과학기술서기관	59
서기관 또는 교정관	3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0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교정관	342
의무사무관	24
약무사무관	13
간호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교감	1,432
공업주사	1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식품위생주사	13
의료기술주사	15

약무주사	3
간호주사	38
시설주사	27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2
교위	1,820
공업주사보	58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35
의료기술주사보	14
간호주사보	62
시설주사보	23
교위 또는 전산주사보	4
전산주사보	1
운전주사보	5
교사	5,636
공업서기	68
방송통신서기	1
식품위생서기	24
의료기술서기	7
간호서기	85
보건서기	1
시설서기	11
교사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1
운전서기	5

교도	6,121
공업서기보	89
식품위생서기보	17
시설서기보	5
운전서기보	261
기록연구사	4
전기운영주사보	2
기계운영주사보	2
통신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5
기계운영서기	6
전기운영서기보	7
기계운영서기보	14
열관리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7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	10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총계	466
일반직 계	466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1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
보호사무관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의무사무관	2
약무사무관	1
간호사무관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보호주사	4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약무주사	2
간호주사	33
간호조무주사	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공업주사	1
의료기술주사	1
방호주사	1

보호주사보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약무주사보	3
간호주사보	62
간호조무주사보	7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의료기술주사보	2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공업주사보	2
방송통신주사보	1
조리주사보	1
보호서기	3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공업서기	2
간호서기	62
의료기술서기	4
보호서기보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식품위생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간호조무서기	16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2
간호조무서기보	138
조리서기보	17

방호서기보	12
기계운영주사보	1
전기운영서기	1
기계운영서기	2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작업치료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회사업 담당)	4
전문경력관 나군(재활치료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5
전문경력관 다군(작업치료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사회사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직업훈련 담당)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 (제33조제5항 관련)

총계	984
일반직 계	984
고위공무원단	2
서기관	16
과학기술서기관	9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보호사무관	46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의무사무관	12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보호주사	106
보호주사 ·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공업주사	1
시설주사	1
간호주사	4
보호주사보	191
공업주사보	4
의료기술주사보	1
간호주사보	19
약무주사보	1
보호서기	193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공업서기	5

시설서기	2
간호서기	4
식품위생서기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조리서기	1
방호서기	1
의료기술서기	1
보호서기보	172
공업서기보	17
식품위생서기보	4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23
조리서기보	56
방호서기보	19
건축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21
전문경력관 나군(교과교육 담당)	13
전문경력관 나군(특수교육 담당)	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

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총계	2,582
일반직 계	2,58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05
전산사무관	4
의무사무관	3
출입국관리주사	437
공업주사	2
전산주사	9
간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보	692
전산주사보	11
방송통신주사보	1
간호주사보	2
보건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출입국관리서기	690
공업서기	3
전산서기	13

운전서기	1
출입국관리서기보	513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6
운전서기보	29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보	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
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총계	2,582
일반직 계	2,58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1
출입국관리사무관	116
전산사무관	4
의무사무관	3
출입국관리주사	426
공업주사	2
전산주사	9
간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보	692
전산주사보	11
방송통신주사보	1
간호주사보	2
보건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출입국관리서기	690
공업서기	3
전산서기	13
운전서기	1
출입국관리서기보	513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6
운전서기보	29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보	11